

2. 복도 및 통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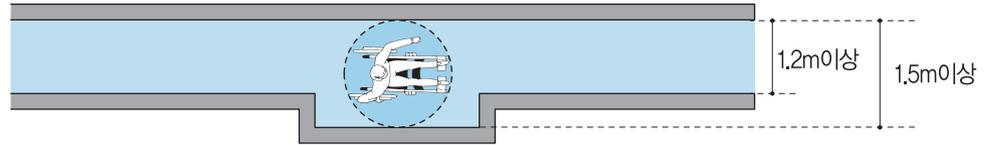


■설치원칙 복도는 각 주거 호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이므로 통행과 각 호로의 접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휠체어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폭과 회전 및 교행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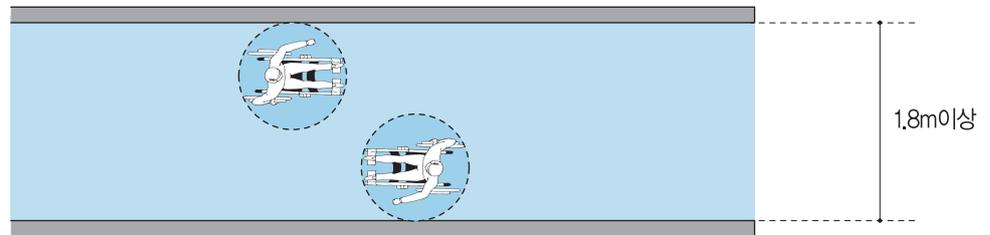
- 설치요점**
- 최단거리로 각 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복도를 짧게 하여야 하며 복도를 복잡하게 연결하거나 원형 또는 방향전환이 반복되면 시각장애인, 노인, 어린이 등은 이용이 어려워진다.
 - 휠체어와 교행할 정도의 폭이 확보되지 못하면 모두의 통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복도는 대부분 어두우므로 턱이나 단차가 있으면 통행에 어려움이 따른다.
 - 바닥마감재는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양탄자의 경우 지나치게 털이 길지 않아야 한다.
 -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인지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하고 통로 안으로 돌출물이나 기타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.

1) 유효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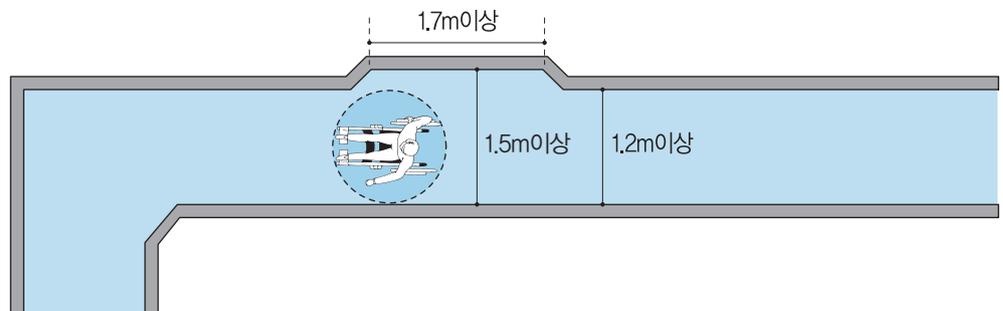
- 복도의 최소 유효폭은 1.2m 이다.
-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폭은 1.5m 이다.
- 휠체어가 상호 교행할 수 있는 최소폭은 1.8m 이다.
- 복도의 적정유효폭은 1.8m 이상이어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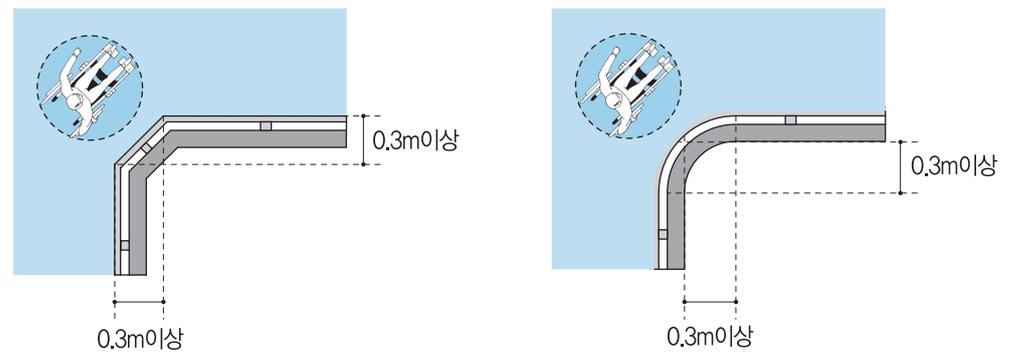
〈회전반경〉



〈적정 유효폭〉



〈복도의 구조〉



〈복도의 면처리〉

2) 바닥 마감

- 복도에 2cm를 초과하는 단차는 노인, 보행장애인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크다.
- 바닥면은 평탄하여야 하고 목발 등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며, 양탄자 등은 털이 길어 휠체어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.
- 바닥 마감재료의 질감, 색상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유도, 경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계단 시작과 끝지점, 장애인용 승강기 조작기와 부대복리시설,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 표지판의 0.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.



3) 안전성 확보

-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.15m에서 0.35m 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.
-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.
- 복도의 바닥면으로부터 2.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만약 유효높이 2.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.6m 이하에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.

